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자발적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적용범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에 한함(제3조)
- 나. (연장기준) 각 제품 단위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제4조)
- 다. (전성분 공개)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 중 총합량이 0.1% 이상 물질과 0.1% 미만이라도 허가·제한·금지 등 규제물질을 화학제품안전포털에 공개(제5조)
- 라. (안전정보 공개) 제품의 전성분 공개 물질 대상으로 원료물질별 관리등급을 화학제품안전포털에 공개(제7조)
- 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기준 및 심사를 충족한 제품의 화학제품안전포털 공개(제8조)
- 바. (사후관리 등) 유효기간 연장 승인 제품의 연장 기준 준수 여부 확인 후,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요구 등 규정(제12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자발적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성분 공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 목록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료 안전성 평가"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유해성 항목별로 유해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등급을 결정하는 평가 과정을 말한다.
3. "안전정보 공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원료 성분의 유해성에 따른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를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으로 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4.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5. "초록누리(화학제품안전포털)"이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화학물질안전원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법 제10조제1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한다.

제4조(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 호에서 정하는 연장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둘 이상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1년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 1년 6개월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경우: 2년

②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 시 유효기간 연장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 이라 한다)과 대표제품에서 파생된 제품(이하 '파생제품' 이라 한다)은 각 제품 단위로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이 각 제품 단위로 서로 다른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적용 시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의 각 제품 단위 연장기간 범위가 다를 경우, 그 중 가장 짧은 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전성분 공개의 기준 등) ①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성분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과 불순물 등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은 특정 용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제품 제조 과정뿐 아니라 원료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물질을 포함(살생물 물질 등)을 포함한다.

② 전성분 공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물질은 제외한다),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 중 제품 내 총 함량의 0.1% 이상 함유된 물질과 총 함량이 0.1% 미만이라도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원료에 대하여 그 함량 정보를 제외한 기업명, 제품명, 제형, 제품 사진, 성분물질명(고유번호)·기능,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초록누리(화학제품안전포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인체 등 유해성 물질 및 허가·제한·금지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3.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4.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성분 공개에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전성분 공개 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전성분 공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5조제1항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신고를 완료한 후 변경을 완료한 증빙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원료 안전성 평가 방법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제품 제형별 소비자 노출 특성 구분, 원료 유해성 항목별 자료 검토, 원료 유해성 수준의 결정, 원료별 관리등급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원료 유해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리등급 결정 등을 위한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보 공개의 기준 등) ① 안전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정보 공개를 위해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 검토, 공개 범위 및 표시 등급 결정 등을 위한 '안전정보 공개 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안전정보 공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원료별 관리등급을 초록누리(화학제품안전포털)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평가되지 않은 물질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원료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개 시 제품의 제형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를 초록누리(화학제품안전포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 ①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3조제14호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등에 관한 고시」를 충족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확인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선정 등을 위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의 성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신고를 완료한 후 변경을 완료한 증빙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공정 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변경을 완료한 증빙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를 초록누리(화학제품안전포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 작성요령) 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는 상세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별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아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의 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소재지(사업장)를 기재한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대표자)·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소재지(사업장)·제조방식을 기재한다.
3. 신청제품 정보는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에 따라 기재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4. 연장신청사유는 ‘전성분 공개’, ‘안전정보 공개’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둘 이상의 연장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한다.

제10조(첨부자료의 종류·범위 및 작성요령) 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2. 전성분 공개 확인서
3. 안전정보 공개 확인서

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확인서

5. 기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통해 전성분 공개, 안전정보 공개, 화학제품저감 우수제품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보완)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자료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자료의 검토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기간은 민원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정하되, 보완기간 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및 보완조치)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유효기간 연장 승인 제품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 연장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결과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나 자발적인 정보제공이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보완을 명하거나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침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취소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6-00호, 2026.5.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